

塵肺의 予防과 塵肺勤勞者의 보호등에 관한 法律 解說

勞動部 產業安全課 提供

第3章 健康管理

第1節 健康診斷

第9條 (採用時 健康診斷) ①事業主는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劳動者를 採用할 때에는 당해 劳動者가 就業하기 전에 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時 健康診斷의 내용·방법 기타 必要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採用時 檢診의 目的是 勤勞禁止 對象者 또는 作業으로 因하여 현저히 병세가 悪化될 우려가 있는 者의 粉塵作業에 就業을 制限하는데 있다. 그러나 塵肺勤勞者를 무조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塘肺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작업장소에 배치함으로써 건강관리를 보다 적절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第10條 (定期健康診斷) ①事業主는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劳動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定期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採用時健康診斷 또는 臨時健康診斷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당해 年度에 한하여 定期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健康診斷의 내용·방법 기타 必要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臨時健康診斷) ①事業主는 勤勞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劳動者에 대하여 臨時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1. 合併症으로 1年이상 療養을 위하여 休職한 劳動者가 復職이 가능하다는 醫師의 所見書를 제출하고 復職을 신청한 때

2.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健康診斷의 내용·방법 기타 必要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 (離職者健康診斷) ①勞動部長官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期間이상 粉塵作業에 종사한 劳動者가 離職후에 離職者健康診斷을 申請하는 때에는 離職者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健康診斷 또는 臨時健康診斷을 받아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塘肺管理區分의 判定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離職한 者에 대하여는 離職者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離職者健康診斷의 申請節次와 내용·방법 기타 必要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이 法에 依한 定期健康診斷은 產業安全保健法에 依한 粉塵作業 從事者에 對한 特殊健康診斷보다 다소 補完된 檢查項目에 對하여 實施하며 健康診斷機關을 指定하여 責任檢診을 實施하여 檢診漏落者가 없도록 하고 健康診斷結果 發見된 塵肺勤勞者에 對하여는 그程度에 따라 塘肺管理區分을 決定하게 된다.

— 이 경우 塘肺管理區分判定에 異議가 있는 勤勞者는 判定通報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진폐건강진단항목 (規則 第10條 내지 第11條)

第10條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방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흉부엑스선 사진 (흉부 전부를 직접 촬영한 엑스선 사진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의한 검사

3. 기왕력, 흉부의 자각증상 및 타각소견의 유무 등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 자 외의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第11條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방법) ①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2. 스파이로메트리 및 프로볼륨곡선에 의한 검사와 동맥혈가스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심폐기능검사

3. 결핵균검사, 엑스선 특수촬영에 의한 검사, 적혈구 침강속도 검사 및 트베르콜린

반응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결핵정밀검사

4. 담에 관한 검사, 결핵균검사 및 엑스선 특수촬영에 의한 검사

5. 폐기량 측정검사, 환기역학검사, 가스교환기능검사, 부하에 의한 폐기능검사 및 심전도 검사

②제1항 제2호의 심폐기능검사는 제10조 제3호의 검사결과 진폐검사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0조 제3호의 검사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심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의 결핵정밀검사는 제10조 제3호의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폐결핵에 걸려 있거나 걸려있을 의심이 있다고 진폐검사의가 진단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 제4호의 검사는 제10조 제3호의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다고 진단된 자 중 폐결핵외의 질병이 합병되거나 합병의 의심이 있다고 진폐심사의가 진단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⑤제1항 제5호의 검사는 제10조 제3호 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가 끝난 자 중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진폐심사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離職者健康診斷은 勤勞者가 有害危險業務에 長期間 從事하다 退職 또는 離職하는 경우에 있어 同業務에 起因하여 發生되는 疾病이 繼續進行되거나 數年後에 새로 發病 (癌種類) 되는데 對備하여 이들에게 平生동안 健康management를 해주는데 目的이 있다. 塘肺는 일단 罹患되면 離職後에도 進行이 될 수 있으므로 勤勞者가 粉塵作業을 떠날 때, 또는 塘肺management區分 判定을 받은 者가 離職할 때 健康診斷을 實施하여 繼續進行되거나 障害가 加重되는 것을 把握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疾病者에 對한 平生健康管理制度는

이 法에서 처음 運營되는 것이므로 매우 큰 意義를 갖는다고 본다.

○ 이 직자건강진단은 분진작업에 1년이상 근무한 자로 함 (規則第12條).

○ 離職者의 정의

法에서 말하는 離職者라 함은 사업장을 퇴직 또는 이직 (移職) 하는 것이 아니라 粉塵作業을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第 13 條 (勤勞者의 健康診斷 受診義務)

勤勞者は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 9 條 내지 第 11 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第 14 條 (健康診斷機關) 第 9 條 내지 第 12 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人力과 施設을 보유한 醫療機關으로서 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者 (이하 “健康診斷機關”이라 한다) 가 이를 행한다.

○ 塵肺健康診斷機關의 人力 및 施設基準(規則第13條 別表2)

가. 人力基準

- 1) 豫防醫學專門醫 또는 塵肺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醫師 1人 以上
- 2) 放射線 專門醫 1人 以上
- 3) 結核 專門醫 또는 結核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醫師 1人 以上
- 4) 放射線 技士 1人 以上
- 5) 看護員 또는 看護補助員 2人 以上
- 6) 臨床病理士 1人 以上

나. 施設基準

- 1) 診療室
- 2) 엑스線撮影室
- 3) 防音室
- 4) 化學實驗室

다. 機械器具 基準

- 1) 視力検査機
- 2) 聰力検査機
- 3) 엑스線撮影機 (500 미리미터 以上에

限함)

4) 심폐기능검사기

5) 結核菌検査에 必要한 培養器

6) 其他 結核精密検査에 必要한 器具 및 消耗品 等

7) 自動血液가스分析機 (血中 산소량 測定)

8) 심전도기 (心理的安定狀態, 肺 및 有關器管과의 機能狀態 分析)

9) 呼吸ガス分析

第 15 條 (健康診斷結果의 제출 등) ①

健康診斷機關이 第 9 條 내지 第 11 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한 때에는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事業主에게 송부하되, 第 10 條 및 第 11 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한 경우 塵肺의 所見이 있는 者의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는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事業主는 第 10 條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한 때에는 健康診斷實施集計表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健康診斷機關이 第 12 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한 때에는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第 1 項 내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 및 健康診斷實施集計表의 書式과 提出期間 기타 必要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 16 條 (產業安全保健法에 의한 健康診斷과의 관계)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의 事業主가 健康診斷을 실시한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產業安全保健法 第 32 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2 節 塵肺勤勞者의 보호

第 17 條 (塵肺管理區分의 判定 및 통지)

①勞動部長官은 第 15 條 第 1 項 및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받은 때에는 健康診斷을 받은 者가 別表에 의한 第 1 種 내지 第 4 種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判定 (이하 “塵肺管理區分判定”이라 한다) 하고 그 결과를 事業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 15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健康診斷을 받은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事業主가 第 1 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結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勤勞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이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의 결과를 事業主에게 통지할 때에는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塘肺管理區分의 目的

塵肺管理區分은 塘肺勤勞者가 높은 賃金 等을 理由로 繼續 粉塘作業 (坑內作業) 을 願하는 現在의 實情을勘案하여 塘肺障害의 程度를 健康管理側面에서 4種으로 區分하고 區分에 따라合理的인 健康管理를 함으로써 塘肺勤勞者의 健康을 保護하기 위함.

○ 塘肺管理區分의 判定基準

塵肺管理區分	判 定 基 準
第 1 種	胸部엑스線寫眞의 像이 第 1 型으로 塘肺에 의한 현저한 肺機能의 障害가 없다고 인정되는 者
第 2 種	胸部엑스線寫眞의 像이 第 2 型으로 塘肺에 의한 현저한 肺機能의 障害가 없다고 인정되는 者
第 3 種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塘

塵肺管理區分	判 定 基 準
	肺에 의한 현저한 肺機能의 障害가 없다고 인정되는 者
	1. 胸部엑스線寫眞의 像이 第 3 型인 者
	2. 胸部엑스線寫眞의 像이 第 4 型으로서 大陰影의 크기가 한쪽 肺野의 3분의 1 미만인 者
第 4 種	1. 胸部엑스線寫眞의 像이 第 4 型으로서 大陰影의 크기가 한쪽 肺野의 3분의 1 이상인 者
	2. 胸部엑스線寫眞의 像이 第 1 型 · 第 2 型 · 第 3 型 또는 第 4 型 (大陰影의 크기가 한쪽 肺野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으로 塘肺에 의한 현저한 肺機能의 障害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비고 : 앞 表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第 1 型 : 肺野에 塘肺에 의한 粒狀影 또는 不定形陰影이 少數있고 塘肺에 의한 大陰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2. 第 2 型 : 兩肺野에 塘肺에 의한 粒狀影 또는 不定形陰影이 多數있고 塘肺에 의한 大陰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第 3 型 : 兩肺野에 塘肺에 의한 粒狀影 또는 不定形陰影이 대단히 多數있고 塘肺에 의한 大陰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4. 第 4 型 : 塘肺에 의한 大陰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胸部엑스線寫眞의 陰影 (型) 別 塘肺管理區分

— 塘肺管理區分 第 1 ~ 4 種과 國際勞動機構 (ILO) 에서 定한 塘肺의 型別分類와의 관계를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胸部엑스線像의 陰影(型) 塵肺管理區分

型 種	1 型		2 型		3 型		4 型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1 種	○							
2 種			○					
3 種		○		○	○		○	○
4 種		○	○		○	○	○	○

* 心肺機能에 현저한 障害가 있는 경우는 (유)이며, 없는 경우는 (무)이다.

第 18 條 (塵肺管理區分 判定에 대한 再審查請求) ① 第 17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嘉肺管理區分判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判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 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再審查를 請求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查請求를 받은 때에는 第 6 條의 規定에 의한 嘉肺審查醫 3 人 이상의 詮問을 받아決定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查請求의 방법 및 절차 기타 再審查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 19 條 (健康管理手帖의 발급) 勞動部長官은 第 12 條 第 1 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者 健康診斷을 받은 者가 嘉肺管理區分判定을 받은 경우에는 健康管理手帖을 발급하여야 한다. 第 12 條 第 1 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者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하고 嘉肺management區分判定을 받은 者가 離職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 20 條 (塵肺勤勞者에 대한 措置) ① 事業主는 合併症이 있거나 別表에 의한 嘉肺의 管理區分의 第 3 種 또는 第 4 種에 해당하고 健康診斷機關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者를 粉塵作業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採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勞動部長官은 嘉肺勤勞者 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粉塵作業이 아닌 作業에 종사하도록 措置 (이하 “作業轉換措置”라 한다) 할 것을 事業主에게 勸告 또는 指示할 수 있다.

③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嘉肺勤勞者의 作業場所의 變更 · 勤勞時間의 短縮 기타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嘉肺로 退職한 勤勞者에 대한 職業訓練의 실시 등 職業安定에 必要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粉塵作業에 採用할 수 없는 자 (令 第 12 條)

— 진폐관리구분이 제 3 종에 해당하고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 4 형인 자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 분의 1 미만인 자

— 진폐관리구분이 제 4 종에 해당하는 자 (다만,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 1 형 및 제 2 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 퍼센트 이내인 자를 제외한다)

— 진폐의 정도가 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지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제 1 호 내지 제 3 호 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9 급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반기로 결정된 자

○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轉換을 勸告하여야 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規則 第 23 條).

— 진폐관리구분이 제 3 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 3 형인 자

— 진폐관리구분이 제 4 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 2 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 퍼센트 이내인 자

— 기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11 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영 제 12 조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7 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한 때에는 10 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21 條 (作業轉換措置者에 대한 보호)

①事業主는 第 20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指示에 따라 作業轉換措置가 된 者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業轉換措置에 勤務한 期間에 대한 退職金의 支給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 28 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支給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를 解雇하여서는 아니된다.

③事業主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支給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의 繼續勤勞年數의 算定에 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지 못한다. 다만, 退職金算定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退職金의 中間精算

一 塵肺勤勞者가 非粉塵部署로 作業轉換되는 경우에 있어 賃金低下 等 勤勞條件上의 不利益을 最小化시키는데 目的을 두고 勤勞者가 有利한 條件에서 退職金을 中間 정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現行 勤勞基準法 適用 勤勞者에게는 認定되지 않는 特例條項이다.

○ 不利益處遇防止

一 繼續勤勞年數 算定에 있어 不利益한 處遇를 할 수 없는 事項은 호봉 算定 등 福利厚生制度 等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한마디의 명언

술이 훌륭한 사람을 더 훌륭히 했다는 일은 전혀 없고, 한편 어리석은 사람은 술로해서 점점 더 어리석어질 뿐이다. 술은 구설을 많게 하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일을 저지르고, 변을 일으킨다. 혼자 마시는 술은 그래도 괜찮다. 둘이 대작하는 술은 덜 좋다.셋이 마주 앉아 마시게 되면, 드디어 그러한 폐단이 생기려 한다. 더구나 여러 사람이 왁자하고 모여 마시는 자리라면, 뜻하지 않은 변이 생기기 쉽다. 그러기 때문에 여럿이 모여 술마시는 자리는 간단히 예를 차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좋고, 흥을 돋우려 할 필요는 없다.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니, 삼가는 것이 좋다. 술로해서 사람이 그 운명을 그르치는 일은 생각해 볼 때 더욱 기 그렇다. <<중국명언>>